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 of ALLNEX	올넥스 구매 표준 약관
(specific legal entity further identified in the Purchase Order, hereinafter referred as "Buyer")	(특정 법적 주체는 구매 주문서에 의하여 특정될 것임. 이하 "구매자")
1. GENERAL 1.1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 along with the purchase order to which it relates (the "Purchase Order"), contains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arties' agreement concerning purchased goods ("the Goods") or services ("the Services") (the "Agreement"), notwithstanding any conflicting provisions in the eventual terms and conditions of sales of the seller (the "Seller"). 1.2 The Agreement may not be modified or superseded, except by a written instrument signed by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of the Buyer. 1.3 By returning an acknowledgement copy of a Purchase Order or delivering Goods and/or performing Services, the Seller recognizes being unconditionally bound by the Agreement.	1. 일반조항 1.1 본 구매 표준 약관은, 판매자(이하 "판매자")의 최종 판매 약관에 상충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구매주문서(이하 "구매주문서")와 함께, 구매 상품(이하 "상품") 또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에 관한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과 조건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본 계약"). 1.2 본 계약은 구매자의 수권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수정 또는 대체되지 않는다. 1.3 구매주문서의 사본에 수령 확인을 하여 반송, 상품 인도 및/또는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판매자는 본 계약에 조건없이 구속되는 것을 인정한다.
2. SPECIFICATIONS AND WARRANTIES 2.1 The quality, quantity and description of the Goods and/or the Services shall be in strict conformity with the Purchase Order and/or any applicable specification(s) supplied by the Buyer to the Seller or agreed in writing by the Buyer. 2.2 The Seller warrants that all Goods and Services delivered are: - of first-class design, construction, execution, materials, composition and quality; - if applicable, in conformity with drawings, other data and the standards designated by Buyer; - of merchantable quality and fit for their intended use; - free of liens and all other encumbrances; -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government laws and regulations; - free of all patent, license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ird parties - performed in a prompt and professional manner in accordance with industry standards. 2.3 The Seller warrants to supply the Buyer spare parts and support the executed Service for at least five (5) years after delivery of the Goods and/or acceptance of the Services. 2.4 All above warranties are continuing and survive acceptance of the Goods or Services by the Buyer.	2. 세부사항과 보증 2.1 상품 또는/그리고 서비스의 품질, 수량, 설명문은 구매주문서 또는/그리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였거나 구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해당 세부사항에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2.2 판매자는 제공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증한다: - 최고급의 디자인, 구조, 제작, 재료, 구성 및 품질을 지님; - 구매자의 설계, 기타 데이터 및 기준에 부합함; - 의도된 용도에 부합하며 판매 적격 품질을 가짐; - 일체의 유치권 및 기타 모든 저당물이 없음; - 관련 법령에 부합함; - 제 3 자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음; - 업계 표준에 따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됨. 2.3 판매자는 상품 배송 및/또는 서비스 수령 후 최소 5년 동안 실행된 서비스에 대한 예비 부품 및 지원을 구매자에게 공급할 것을 보증한다. 2.4 모든 위 보증은 구매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수령한 이후에도 존속한다.
3. PRICE 3.1 Unless stated otherwise in the Purchase Order, the price of the Goods and/or Services shall be: - exclusive of any applicable value added tax and goods and services tax; - inclusive of all other imports and taxes, duties, transport and travelling costs, and costs of insurance, adequate packaging, unloading, inspections, tests, certificates and the like. 3.2 The price shall not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the prior written	3. 가격 3.1 구매 주문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또는/그리고 서비스의 가격은: -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세를 제외하되; - 모든 수입액과 세금, 관세, 운반 및 교통비, 보험금, 적절한 포장비, 하역비, 검열비, 검사비, 인증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어야 한다. 3.2 가격은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없다.

consent of the Buyer.	
4. PAYMENT 4.1 The Seller shall invoice the Buyer at any time after delivery of the Goods or performance of the Services. 4.2 Unless otherwise agreed, payment shall be due sixty (60) days after the end of the month following receipt of a correct invoice or the Goods and/or Services, whichever is later. Payments initiated on the second working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payment due date shall be deemed timely upon initiation. 4.3 The Buyer shall be entitled to set off any amount owed to Buyer or any of its affiliated companies from Seller or any of its affiliated companies against any amount payable by Buyer to Seller. In the event such set off involves Seller's affiliate, Seller hereby agrees to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on any debt owed by such affiliate up to the amount payable by Buyer to Seller. 4.4 Seller may not assign any moneys due or which are to become due under the Agreement.	4. 지급 4.1 판매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이후 언제든지 구매자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4.2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의 지급은 상품 또는/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인보이스를 수령한 달 중 더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월 두 번째 근무일에 대금이 지급을 시작하는 경우 대금의 지급일이 지났더라도 적시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4.3 구매자는, 구매자(또는 그 계열회사)에게 판매자(또는 그 계열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과 구매자(또는 그 계열회사)가 판매자(또는 그 계열회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위 상계에 판매자의 계열회사가 관련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계열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구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액까지 계열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 4.4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을 양도할 수 없다.
5. DELIVERY 5.1 Delivery takes place on agreed ICC INCOTERMS. If no INCOTERMS apply, delivery shall be understood to occur at the moment unloading has finished taking place at the location designated by Buyer. 5.2 Time of delivery of the Goods and of performance of the Services is of the essence and shall start to run from the date of acceptance by the Seller of the Purchase Order or the date on which the Seller is placed in possession of such information and drawings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him to start work on the Goods or the Services, whichever may be the later. 5.3 Exceeding the completion deadlines for the execution of the Services or delivery dates of the Goods shall automatically result in the application of a penalty equal to 1% of the total amount of the Purchase Order per working day of delay, capped at 10% of the total amount of the Purchase Order. This penalty may not under any circumstances be considered as a waiver of the right to terminate the Purchase Order according to art.14.2 or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for any loss suffered by the Buyer. 5.4 Delivery of Goods in instalments shall be permitt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Buyer and such permission, if given, shall not entitle the Seller to claim payment prior to completion of the Agreement unless the Buyer has agreed in writing. 5.5 If the Buyer is not able to accept delivery of the Goods or installation of the Goods when due, the Seller shall be responsible for arranging suitable storage at suitable premises of the Goods, advising the Buyer beforehand of the particulars of such proposed	5. 인도 5.1 인도는 ICC INCOTERMS에 의해 이루어진다. ICC INCOTERMS 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도는 구매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이 끝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한다. 5.2 상품의 인도 및 서비스의 이행에 있어 시간 엄수는 필수적이며 시간은 판매자가 구매주문서를 수령한 날 또는 판매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정보 또는 도면을 취득한 최종일 중 더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시작된다. 5.3 서비스 이행 완료 기한 또는 상품 배송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된 근무일당 구매주문서 총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단, 이는 구매주문서 총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위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 제14.2조에 따른 구매주문의 해지 또는 구매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 없다. 5.4 상품의 분할 인도는 구매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판매자는 본 계약이 완료되기 이전에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 5.5 만약 구매자가 기한 내에 상품 인도 또는 설치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적절한 보관 시설에 상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고, 사전에 위와 같은 보관의 세부내역에 대해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또한 판매자는 상품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 모든 일상적인 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보험처리가 되도록 보증하여야 하며 구매자에게 그러한 보험처리에 관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5.6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인도 일자 이전에 운송이 이루어진

storage and the Seller shall also ensure that the Goods and the premises in which they are stored are properly insured against all the usual risks and notify the Buyer of such insurance cover. 5.6 If delivery is made before the delivery date specified in the Purchase Order, the Buyer may return the Goods to the Seller at the Seller's risk and expense. 5.7 Each delivery must be accompanied by details of the exact quantity and description of the Goods and/or the Services performed. Shipping documents stating the relevant Purchase Order number for each shipment must be sent by regular mail or email to the plant or office which issued the Purchase Order on the day on which the shipment is made, marked for the attention of the logistic/receiving office. Invoices stating the relevant Purchase Order number should be sent on .pdf form to APinvoicesKR@allnex.com. When Goods are invoiced by the Seller but shipped by a third party, the invoice shall bear the name of the shipper and the point from which the delivery originated. If shipment is not delivered to the allnex premises, the original bill of lading must be furnished with the invoice(s). 5.8 Delivery is completed only if the agreed Goods or Services are delivered in their entirety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t the location designated by Buyer. 5.9 The Seller shall provide Buyer a current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for each Good supplied to Buyer under the Agreement on an annual basis or sooner in the event such document has been modified. 5.10 If the Seller is in the position of being able to supply some but not all of its customers, the Buyer shall be given priority over all other of the Seller's customers.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의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판매자에게 상품을 반송할 수 있다. 5.7 모든 운송은 인도할 상품 또는/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확한 수량과 세부적인 서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각 운송에 해당하는 구매 주문 번호가 적힌 선적 서류들은 선적이 이루어지는 날 일반우편 또는 이메일로, 구매주문서를 발송한 구매자의 공장이나 회사로 회계 담당자를 참조로 하여 발송되어야 한다. 운송에 해당하는 구매 주문 번호가 적힌 인보이스는 PDF 양식으로 APinvoicesKR@allnex.com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판매자에 의하여 상품의 인보이스가 발행되었으나 제3자에 의해 선적된 경우, 인보이스에는 운송업자의 이름과 운송이 시작된 지점이 표기되어야 한다. 선적이 올넥스의 부지까지 배송되지 않을 경우, 선적 비용 청구서 원본이 인보이스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구매자의 계산은 모든 선적이 종료됨으로써 인정된다. 5.8 선적은 합의된 상품 및 서비스가 온전히 본 계약에 따라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된 경우 완료된다. 5.9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각 상품에 대해 물질 안전 데이터 문서(이하 "MSDS") 1년에 한번(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 시) 제공해야 한다. 5.10 판매자가 자신의 고객들 모두가 아닌 일부에게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구매자는 판매자의 모든 다른 고객들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
6. CHANGES/EXTRA WORK 6.1 The Seller shall not make any changes in designs or specifications to the Goods or Services except with the written consent or at the written request of Buyer. 6.2 The Seller shall not change or modify the Goods, its production processes or methods, production location, qualitative and/or quantitative compositions, reagents, ingredients and/or solvents used in the production process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r at written request of the Buyer. In case the Seller intends to implement one of the described changes or modifications it shall inform the Buyer hereof at least 3 months in advance. 6.3 The Seller shall at all times make technically feasible changes in or additions to agreed Goods or Services, as desired by Buyer. 6.4 Changes and additions shall not lead to an increase in the agreed price or an extension of the agreed time of delivery unless and to the extent reasonable and provided that within five (5) days after the request of Buyer for such changes or additions the Seller has made a written proposal to Buyer with respect to an increase or an extension before the execution of said changes or additions and also	6. 변경사항/특별 업무 6.1 판매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디자인이나 세부사항에 대해 구매자의 서면 동의 또는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어떠한 변경도 가해서는 아니 된다. 6.2 판매자는 상품, 상품 생산 과정 또는 방법, 생산 지역, 품질 또는/그리고 수량 구성, 상품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시약, 재료 또는/그리고 용액을 구매자의 서면 동의 또는 서면 요청 없이 변경하거나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판매자가 명시된 변경이나 수정을 시행하려고 할 때, 판매자는 적어도 3개월 이전에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6.3 판매자는 언제나 구매자가 희망하는 대로 합의된 상품 또는 서비스 내에 또는 이에 더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변경을 가해야 한다. 6.4 변경과 추가 때문에 합의된 가격을 인상하거나 합의된 인도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이것이 합리적인 경우 합리적인 수준 까지만, 구매자가 변경 및 첨가를 요구한 이후 5일 이내 또는 그러한 변경 및 첨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인상 또는 연장에 대해 서면 제안을 했고 또한 구매자가 그 시행 이전에 제시된 가격과 변경 및 추가에 대해

provided that Buyer has agreed in writing with the changes and additions as well as the indicated price by Seller before they are executed. 6.5 Buyer is entitled to rescind or terminate the Agreement in whole or in part if implementation of the changes or additions it desires does not appear to be possible on conditions acceptable to it. In this case, the Seller shall be entitled, if applicable, to compensation as set out under article 14.3.	서면으로 동의하였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6.5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변경 혹은 추가를 이행하는 것이 조건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본 계약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폐지하거나 종결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한다면, 판매자는 제14.3 조에 명시된 대로 보상에 대한 권리가 있다.
7. BUYER'S MATERIALS AND EQUI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7.1 All specifications, drawings, patterns, artwork, designs tools, dies, moulds and other items furnished by the Buyer to the Seller or the cost of which is charged against the Purchase Order (a) are confidential and shall not be disclosed by the Seller to any other person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Buyer, (b) shall not be copied or used for any other purpose other than for the carrying out of the Purchase Order, (c) sha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Buyer, (d) shall be returned at the Seller's risk and expense in good order and condition to the Buyer immediately upon request or on completion of the Purchase Order and (e) shall be insured against all risks by the Seller whilst they are in its possession. 7.2 If any item furnished by the Buyer to the Seller or the cost of which is charged against the Purchase Order is damaged or destroyed whether due to the defective workmanship of the Seller or any other reason it shall be replaced or paid for by the Seller. 7.3 Where the Goods are designed, created or otherwise developed by or for the Seller pursuant to the Purchase Order, then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in or relating thereto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patents, copyrights, design rights, registered designs,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know-how and the rights to apply for any of the forego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belong to the Buyer or its affiliated entity absolutely. The Seller hereby assign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Buyer with the intent that upon the making or creation there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automatically vest in the Buyer and the Seller shall, at the Buyer's request, (and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sign and execute and procure the signature and execution of all such documents and do all such acts as the Buyer may reasonably require to vest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Buyer. 7.4 The Seller warrants that the delivered Goods and/or Services and the use thereof do not violate any intellectual or industrial property rights.	7. 구매자의 자재와 장비, 지적재산권 7.1 모든 세부사항, 그림, 무늬, 삽화, 디자인 도구, 염색, 주형 및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다른 물품 또는 구매주문서에 청구되는 비용은 (a) 기밀사항이며 구매자의 사전 동의 없이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고, (b) 구매주문서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 이외의 모든 목적을 위해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c) 구매자의 소유물로 남고, (d) 요구가 있거나 구매주문서의 요구사항을 완료하였을 때 즉시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양호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되돌려져야 하고, (e)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판매자가 모든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7.2 만약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비용이 구매주문서에 청구된 품목이 손상되거나 파괴될 경우, 그것이 판매자의 기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든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든 간에, 판매자가 교체하거나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7.3 구매주문서에 따라 판매자에 의해, 혹은 판매자를 위하여 상품이 디자인되거나, 창조, 개발되는 경우, 전 세계에 걸쳐 그것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 (특허, 저작권, 디자인권리, 등록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노하우, 상기 사항에 적용되는 권리 등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하 "지식재산권")은 절대적으로 구매자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한다. 이로써 판매자는 상기 사항들의 제조 혹은 창조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 자동으로 구매자에게 부여되게끔 하도록 지식재산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본 계약의 종료에도 상관없이) 이러한 모든 문서 서명과 체결을 서명, 체결 및 조달하며 구매자가 위의 지식재산권을 부여받는 것을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취한다. 7.4 판매자는 운송되는 상품 또는/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이들의 사용이 어떠한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8. PROHIBITION ON CONTRACTING OUT The Seller is not allowed to transfer or contract out to third parties, in whole or in part,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except with the written consent of the Buyer.	8. 하도급 금지 구매자의 서면으로 된 동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가 본 계약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한다.

9. INSPECTION, TESTING, NO RELEASE 9.1 Buyer is at all times entitled to inspect or have inspected, to examine or have examined and/or to test or have tested the Goods or Services, irrespective of where the Goods are located or the Services are performed. 9.2 Inspection, examination, testing, purchase and/or payment by or on behalf of Buyer does not release the Seller from any obligation or liability under the Agreement.	9. 점검, 시험, 면책 불허 9.1 구매자는 상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는 서비스가 어디서 제공되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상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점검 또는 점검하도록, 검사 또는 검사하도록 및/또는 시험 또는 시험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9.2 구매자에 의한 또는 구매자를 대신한 점검, 검사, 시험, 구매 및/또는 지급은, 판매자를 본 계약에 의한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10. RISK AND TRANSFER OF TITLE 10.1 Goods to be delivered and/or Goods with respect to which Services will be performed are for the account and risk of the Seller until the completion of the delivery as referred to in article 5.8. 10.2 If Buyer makes any payment before delivery, the title to the Goods to be imputed to that payment is transferred to Buyer at the moment of payment. The Seller is obligated to identify and to keep identifiable the Goods belonging to the Buyer which are still present at the Seller's premises. For these Goods, the Seller shall hold them on behalf of the Buyer.	10. 위험 부담 및 권리 양도 10.1 제5.8조에 언급된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배달되어야 할 상품들 및/또는 서비스가 제공될 상품들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 및 위험을 부담한다. 10.2 배달이 되기 전, 구매자가 어떠한 지급을 할 경우, 지급을 할 당시, 그 지급에 귀속되는 상품들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양도된다. 판매자는 현재 판매자 부지에 있지만, 구매자 소유인 상품들을 확인하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 판매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다.
11. PUBLIC ORDER, SAFETY AND ENVIRONMENT 11.1 The Seller and its employees or third parties brought in by it applicable at all locations relevant under the Agreement must strictly comply with all rules, regulations, orders and instructions in force in the place where the work is performed with respect to public order, safety and the environment. 11.2 Seller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elated to the import, export, transportation, storage, handling, distribution, disposal, labelling, promotion and sale of the Goods, including obtaining any applicable import/export product licenses and broker licenses. 11.3 Seller warrants that all applicable regulatory requirements are complied with. In case the REACH Regulation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REACH) applies (or its revised version), the latter warranty shall apply until the Goods, their chemical elements and/or compounds as defined by Art. 3 paragraphs 1) and 2) REACH (or their equivalent in the revised regulation) have reached the end of the supply chain. Seller furthermore warrants undertaking its best efforts to keep and defend the marketability of the Goo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e-registration, registratio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and/or defense against restriction. Seller shall constantly follow the regulatory status of the Goods, its chemical elements and/or compounds and inform BUYER immediately about any discussion of their regulatory status.	11. 사회 질서, 안전 및 환경 11.1 본 계약에 의거하여 관련된 모든 지역에서 적용을 받는 판매자 및 그의 직원들 또는 판매자에 의해 관여된 제3자는, 공공질서,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일이 수행되는 장소에서 효력 있는 모든 규정, 법규, 명령 및 지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1.2 판매자는 관련 수출입 제품 라이선스 및 중개 라이선스 취득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 수출, 운송, 보관, 취급, 유통, 폐기, 라벨링, 홍보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11.3 판매자는 관련된 모든 규제 요건들이 준수될 것임을 보증한다. 유럽 의회 및 장관회의 제1907/2006 또는 그 개정 버전이 상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적용될 경우, 아래의 보증은 동 법규 제3 조1)항 및 2)항 (또는 개정된 법규상 관련 규정)에 정의된 상품들, 해당 상품의 화학 요소 및/또는 화합물들이 공급망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된다. 또한, 판매자는 상품의 시장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예비 등록, 등록, 승인 신청 및/또는 적용될 수 있는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증한다. 판매자는 상품, 상품의 화학 요소 및/또는 화합물의 규제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 구매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2. LIABILITY AND REJECTION OF GOODS AND/OR SERVICES 12.1 In the event of breach of the warranties set forth in art.2, Buyer	12.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 및 상품의 거절 12.1 본 계약 제2조에 명시된 보증을 위반하는 경우, 구매자는

shall notify it in writing to the Seller within thirty (30) days from discovery of such defect. Seller, at its own expense, at Buyer's option, shall correct by (i) repair, (ii) replacement or (iii) re-imbursement such breach as soon as possible, but not more than ten (10) days after written notice from Buyer. If the breach is not so corrected, then Buyer, at its option, shall have the same options again. If a part of the Goods and/or Services is replaced, repaired or modified, the warranties apply under the same condition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placed, repaired or modified Goods and/or Services. 12.2 The Seller hereby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the Buyer, its subsidiaries and the officers, directors and employees of the Buyer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actual or alleged claims, demands, loss, damage, liabilities, settlement amounts, costs or expenses whatsoever (including court costs and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costs) arising from, (a) a breach of Seller under the Agreement, which breach shall include, without limitation, (i) a defect occurring in the manufacture, processing, packaging or labelling of the Goods, and (ii) a breach of any of the warranties set out under articles 2, 7.4 and 11.2; (b) injury to property or persons arising out of the act or omission or the negligence of the Seller, its employees, servants, agents, sub-contractors or others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Agreement save in so far as the same is attributable solely to the negligence of the Buyer or its employees, servants, agents or sub-contractors. 12.3 The Buyer reserves the right to reject all or any part of the Goods and/or the Services which the Buyer considers do not conform with article 2 of the Agreement or to the Purchase Order and to return such rejected Goods to the Seller at the Seller's risk and expense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emedy the Buyer may have at law, the Buyer may, at its option, have the rejected Goods and/or Services or part thereof replaced or re-performed by the Seller at the Seller's expense.	그러한 결함을 발견한 날로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판매자는 이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단 구매자의 서면 통지 후 십(10)일 이내에 (i) 수리, (ii) 교체 또는 (iii) 배상을 통해 그러한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옵션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일부가 교체, 수리 또는 변경된 경우, 보증은 교체, 수리 또는 변경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수령한 날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된다. 12.2 판매자는 (a) 본 계약상 판매자의 위반 (이는 (i) 상품의 제조, 처리, 포장 또는 라벨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 그리고 (ii) 제2조, 7.4조 및 11.2조에 명시된 모든 보증의 위반을 포함 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b)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직원, 종업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자의 단독 과실로 기인한 것은 제외하고, 판매자, 판매자의 직원들, 사원들, 대리인, 하도급자 또는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행동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 피해 또는 개인에 대해 상해로부터 발생하는 사실상 또는 주장된 모든 청구, 요구, 손실, 손해, 책임, 합의 금액, 비용 또는 지출(재판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지출을 포함)로부터 구매자, 구매자의 회사들 및 임원들, 구매자의 관리자 및 직원들을 보호하며 책임을 면해주는 것에 동의한다. 12.3 구매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본 계약서의 제2조 또는 구매주문서와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고 거절한 상품들을 판매자의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판매자에게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구매자는 구매자가 법률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떠한 해결방안에 대해 법적으로 불리한 영향 없이, 구매자의 선택으로, 판매자로부터 그리고 비용도 판매자의 부담으로, 거절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대체 받거나 다시 받을 수 있다.
13. INSURANCE 13.1 The Seller shall at all times possess the following insurance cover: 13.1.1 Workers Compensation, where applicable, to statutory limits 13.1.2 Employers Liability to a minimum of €500,000 (EURO) each accident/disease; 13.1.3 Public Liability to a minimum of €1,000,000 (EURO) for any one incident and €2,000,000 (EURO) in aggregate loss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Buyer in writing; 13.1.4 Auto Liability for property damage and/or bodily injury caused to Buyer's property or to person(s) by any motor vehicle in the control of the Seller, its employees, agents and sub-contractors to a minimum of €1,000,000 (EURO); 13.1.5 Product Liability to a minimum of €10,000,000 (EURO); 13.1.6 all other loss, damage, injury or other claim incurred to or by the Seller or the Buyer which may arise out of the Agreement.	13. 보험 13.1 판매자는 상시 다음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13.1.1 해당하는 경우, 법정 한도 범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13.1.2 각 사고/질병당 최소 500,000유로의 고용주 보험; 13.1.3 구매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1) 건의 사고에 대해 최소 1,000,000유로 및 2,000,000유로의 총 손실에 대한 공공 보험; 13.1.4 판매자, 직원, 대리인 및 하청업체가 관리하는 모든 자동차에 의해 구매자의 재산 또는 개인에게 야기되는 재산 손해 및/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최소 1,000,000유로의 자동차 보험; 13.1.5 최소 10,000유로의 제조물 책임 보험; 13.1.6 본 계약에 의해,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또는 그들에 의해 발생한 다른 모든 손실, 손해, 부상 또는 기타 청구. 13.2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구매자로

13.2 The Seller shall submit evidence of such insurance to the Buyer for approval prior to commencing any work under the Agreement.	부터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이러한 보험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SUSPENSION/RESCISSION/TERMINATION 14.1 Buyer is authorised to suspend its obligations pursuant to the Agreement or to rescind or terminate the Agreement in whole or in part (hereafter: rescission)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and without previous notice of default, if and insofar as the Seller does not, does not in a timely fashion, or does not adequately fulfil any obligation toward Buyer, as well as in case of moratorium or bankruptcy of the Seller, attachment of (a part of) its company property or goods inten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closing down or liquidation of its business. In that case, Buyer is only obligated to compensate the Seller at the pro-rata price for the Goods or Services already delivered, but only insofar as the Services delivered were also in fact useful to Buyer, and/or Buyer desires to keep the Goods, all this without prejudice to Buyer's right to damages to which it is entitled by virtue of article 12. 14.2 Failure to fulfil in a timely fash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14.1 also occurs if there is a delay in production or implementation plans received or stipulated by Buyer, or if under the circumstances, the presumption is reasonably justified that a delay shall take place in the execution of any (part of an) obligation under the Agreement. 14.3 Buyer is authorised to rescind the Agreement in whole or in part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if the contract with its own buyer or customer for whose benefit the Agreement with the Seller was solely entered into is for whatever reason rescinded, terminated or suspended in whole or in part. In that case, as well as in the case of article 6.5, Buyer is only obligated to compensate the Seller at the pro-rata price for the Goods or Services already delivered. 14.4 If Buyer or the Seller is prevented from fulfilling the Agreement for more than thirty (30) days by force majeure, both parties are entitled to rescind the Agreement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of rescission, against compensation at the pro-rata price for the Goods or Services already delivered. 14.5 Apart from the above-mentioned cases, Buyer is authorised to rescind the Agreement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against payment at the pro-rata price for the Goods or Services already delivered, and if the Seller establishes that it has thereby suffered damage or loss, increased by a maximum of ten percent (10%) of the remaining agreed price as compensation for this damage and loss (lost profits included therein). Any claim of the Seller to further supplementary or substitute damages are excluded.	14. 유예/해제/해지 14.1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의무를 적절한 시기 내에 또는 적절한 수준으로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판매자가 지급 유예 또는 파산한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이행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회사의 재산이나 재화(의 일부)가 압류된 경우, 그리고 판매자의 회사가 해산되거나 청산되는 경우에 있어서 구매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및 해지 (이하,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구매자는 제공된 서비스 또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때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또는 상품을 보유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도한 상품 또는 서비스 분량에 비례하는 가격에 대해서만 판매자를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안은 제12조에 따라 구매자가 갖는 손해 배상권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4.2 제14.1조에 언급된 적절한 시기 내에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생산이 지연되거나 구매자가 제공 받은 혹은 명시한 구현 계획에 지연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일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3 만일 구매자가 판매자와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단독의 목적이었던 (구매자의) 구매자 또는 고객 간의 약정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해제, 해지, 또는 정지될 경우, 구매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 통지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및 제6.5조의 경우에 있어서, 구매자는 이미 인도된 상품 또는 서비스 분량에 비례하는 가격에 대해서만 판매자를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 14.4 만일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삼십(30)일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양당사자는 계약 해제의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인도된 상품 또는 서비스 분량에 비례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14.5 앞서 언급된 경우들을 제외하고, 구매자는 이미 인도된 상품 또는 서비스 분량에 비례하는 가격에 대한 보상을 하면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만약 판매자가 계약 해제로 인해 피해 또는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경우, 구매자는 잔여 계약금에서 최대 10% 인상한 금액을 그 피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에 이윤 손실도 포함된다) 지불해야 한다. 판매자의 추가 피해 또는 대체 손해에 대한 모든 청구는 배제된다.
15. DISPUTES AND APPLICABLE LAW 15.1 All disputes existing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heard exclusively by the competent court of the registered seat of the Buyer, unless Buyer prefers another competent forum.	15. 준거법 및 관할법원 15.1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모든 분쟁은 구매자가 다른 관할 법원을 선호하지 않는 한 구매자의 등록 소재지를 규율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15.2 The Agreement between Buyer and Seller is subject to the law of the country of the Buyer.	15.2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체결된 본 계약은 구매자 나라의 법규를 준거법으로 한다.
16. SUSTAINABILITY Buyer operates its business with a strong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aligning itself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standards. These ESG Standards encompas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nvironmental protection, labor and human rights, and responsible corporate governance.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Buyer interpretation of these ESG Standards can be found in the Supplier Code of Conduct which you can find by clicking here. The Buyer firmly expects the Seller to adhere to these ESG Standards and urges the Seller to ensure that all its subcontractors, regardless of tier, also strictly follow these ESG standards. The Buyer retains the right to verify the Seller's compliance with the mentioned ESG Standards, either directly or through third parties appointed by the Buyer, after providing prior notic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or remedies available to the Buyer, any breach of this article is deemed to be a breach of the Agreement which shall entitle the Buyer to terminate the Agreement for cause according to article 14.1.	16. 지속가능성 구매자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표준을 준수한다. 이러한 ESG 표준은 산업 보건 및 안전, 환경 보호, 노동 및 인권, 책임 있는 기업 거버넌스를 포괄한다. 이러한 ESG 표준에 대한 구매자의 해석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은 당사의 공급업체 행동 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링크 참조). 구매자는 판매자가 이러한 ESG 기준을 준수할 것을 확고히 기대하며, 판매자가 모든 수준의 하청업체로 하여금 이러한 ESG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구매자는 사전 통지 후 직접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판매자의 위 언급한 ESG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구매자에게 가용한 다른 권리나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고, 본 조항의 위반은 본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구매자는 본 계약 제14.1조에 따른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권한을 갖는다.
17 PRIVACY & COMPLIANCE 17.1 Seller warrants that it complies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orders and regulations covering the delivery of the Goods and/or performance of the Services. 17.2 The Seller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inter)national privacy laws, rules and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Agreement. The Seller expressly warrants neither to process any personal data for its own purpose nor to involve any subcontractors in processing any personal data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Buyer. The Buyer is entitled to audit the Seller's compliance with these privacy law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eller's obligation to take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personal data involved. The Seller shall contribute and cooperate to the execution of such an audit and shall insure that its subcontractors will contribute and cooperate as determined necessary by the Buyer. 17.3 Seller agrees to comply with financial, economic and trade sanctions ("Restrictive Measures") laws and regulations enforced by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mong others, which may apply from time to time. Seller shall not supply the Goods from countries or persons that are sanctioned by the Restrictive Measures.	17.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정 준수 17.1 판매자는 상품의 배송 및/또는 서비스의 이행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모든 관련 법률, 규칙, 명령 및 규정을 준수함을 보증한다. 17.2 판매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모든 국내/국제 개인정보 보호법, 규칙,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판매자의 목적을 위해 어떠한 개인정보도 처리하지 않고, 모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하청업체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보증한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관련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등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사할 수 있다. 판매자는 그러한 감사를 실행하는 데 기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구매자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로 하청업체가 기여하고 협력할 것임을 보장한다. 17.3 판매자는 수시로 적용될 수 있는 유럽연합, 미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행하는 금융, 경제 및 무역 제재(이하 "제한 조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 판매자는 제한 조치에 의한 제재를 받는 국가 또는 개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18. CONFIDENTIALITY Seller shall not disclose any technical, commercial, organizational, scientific, business information,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Buyer ("Confidential Information"), disclosed to, learned by, or	18. 기밀 유지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자신, 그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하거나, 알게 되었거나, 개발한 구매자의 기술, 상업, 조직, 과학, 사업 정보 또는 지적재산권(이하 "기밀 정보")을 공개해서

developed by it, its employees or agents under the Agreement. In addition Seller shall (i) not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ther than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ii) not allow access to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to personnel who do not need obligations hereunder and; (iii) protec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with at least the same level of care as it uses for its own confidential information of a similar nature but not less than a reasonable level of care.	는 안 된다. 또한 판매자는 (i)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외에 기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ii) 본 계약에 따른 의무가 필요하지 않은 직원에게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iii)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자사 기밀 정보에 사용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기밀 정보를 보호하되 합리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이를 보호해야 한다.
19. GENERAL 19.1 Failure to exercise or delay in exercising any right or power under the Agreement shall not operate as a waiver nor shall any single or partial exercise of any right power or privilege preclude any other or further exercise thereof or the exercise of any other power right or privilege. 19.2 Should any part of the Agreement be held unenforceable or in conflict with the applicable laws or regulations of any jurisdiction, the invalid or unenforceable part or provision shall be replaced with a provision which accomplishes, to the extent possible, the original business purpose of such part or provision in a valid and enforceable manner, and the remainder of the Agreement shall remain binding upon the parties.	19. 기타조항 19.1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그러한 권리 및 권한의 포기나 작용하지 않으며, 권리, 권한, 및 특권의 단일적인 또는 부분적인 행사는 그러한 권리, 권한, 및 특권 또는 다른 어떠한 권리, 권한, 및 특권의 다른 또는 추가적인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19.2 만일 본 계약의 어떠한 부분이 시행 불가능하거나 관할 내의 준거법 또는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거나 시행 불가능한 부분 또는 조항은 가능한 한 본래 사업 목적을 유효하고 시행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조항으로 대체될 것이며,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양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유지한다.